

改 正 案 對 現 行 憲 法 對 比 表

現 行 憲 法	改 正 案	備 考
附 則	附 則	
<p>第1條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.</p> <p>第2條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選舉는 1981年 6月 30日까지 實施한다</p> <p>第3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이 選出됨과 동시에 終了된다.</p> <p>第4條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施行 당시의 統一主體 國民會議는 廢止되고 그 代議員의 任期도 終了된다.</p> <p>第5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終了된다.</p> <p>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舉된 最初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로부터 開始된다.</p> <p>第6條 ①國家保衛立法會議는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存續하며,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最初의 集會日 前日까지 國會의 權限을 代行한다.</p>	<p>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. 다만,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·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舉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前에 할 수 있다.</p> <p>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選舉는 이 憲法施行日 40日前까지 實施한다.</p> <p>②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.</p> <p>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舉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,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舉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.</p> <p>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.</p>	

改 正 案 對 現 行 憲 法 對 比 表

現 行 憲 法	改 正 案	備 考
<p>②國家保衛立法會議는 各界의 代表者로 構成하되, 그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.</p> <p>③國家保衛立法會議가 制定한 法律과 이에 따라 行하여진 裁判 및 豫算 기타 處分등은 그 效力을 持續하며 이 憲法 기타의 이유로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.</p> <p>④國家保衛立法會議는 政治風土의 刷新과 道義政治의 具現을 위하여 이 憲法施行日 以前의 政治的 또는 社會的 腐敗나 混亂에 현저한 責任이 있는 者에 대한 政治活動을 規制하는 法律을 制定할 수 있다.</p> <p>第7條 새로운 政治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이 憲法施行과 동시에 이 憲法施行 당시의 政黨은 당연히 解散된다. 다만, 늦어도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大統領選舉日 3月 以前까지는 새로운 政黨의 設立이 보장된다.</p> <p>第8條 ①이 憲法에 의하여 選舉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更된 公務員과 大法院長·大法院判事·監查院長·監查委員·憲法委員</p>	<p>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變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查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하며, 이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.</p> <p>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が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이 憲法 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.</p> <p>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效力을 持續한다.</p> <p>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</p>	<p>헌법규정 3공화국 이후 이반된 것임</p>

改 正 案 對 現 行 憲 法 對 比 表

現 行 憲 法	改 正 案	備 考
<p>會 委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,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.</p> <p>②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最初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.</p> <p>第9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持續한다.</p> <p>第10條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を 감안하여 順次的으로 構成하되, 그 構成時期는 法律로 정한다.</p>	<p>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.</p>	